

2017년 가평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7. 2.

가평군수 (인)



- ◆ 우리 군의 '17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4,170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7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5,011억원)보다 841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83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312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0억원입니다.
- ◆ 우리 군의 '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5.29%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7.42%입니다.
- ◆ 우리 군의 '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0억원의 적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단체에 비해 자주도가 높은 편이지만, 유사단체 평균에 비해 살림규모가 작고 자립도가 낮으며, 유사단체의 평균 자립도와 자주도가 증가한데 반해 우리 군의 자립도와 자주도는 소폭 감소하였고, 살림규모의 증가분도 유사 자치단체의 8.6%수준에 불과해 예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p.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 당 자 : 기획감사실 김학선(031-580-2054)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가평균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4,170	4,143	26	5,011	4,708	303
	세출예산	4,170	4,143	26	5,011	4,708	303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재정통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25.29	26.20	△0.91	25.72	23.88	1.84
	재정자립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67.42	70.78	△3.36	64.39	63.41	0.98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22	60	△82	21	26	△5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상황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7년도 가평균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16,982	309,474	43,579	33,623	30,305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340,702	361,665	396,018	414,338	416,982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55,872	100	263,392	100	278,323	100	278,541	100	309,474	100
지방세	36,390	14.22	37,160	14.11	38,218	13.73	40,271	14.46	46,000	14.86
세외수입	34,091	13.32	11,664	4.43	11,861	4.26	12,697	4.56	12,253	3.96
지방교부세	97,270	38.02	97,270	36.93	101,800	36.58	103,179	37.04	110,391	35.67
조정교부금 등	17,576	6.87	15,892	6.03	20,633	7.41	21,006	7.54	20,000	6.46
보조금	70,544	27.57	75,406	28.63	85,811	30.83	81,388	29.22	100,831	32.5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26,000	9.87	20,000	7.19	20,000	7.18	20,000	6.46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가평균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16,982	309,474	43,579	33,623	30,305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340,702	361,665	396,018	414,338	416,982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55,872	100	263,392	100	278,323	100	278,541	100	309,474	100
일반공공행정	21,840	8.54	22,022	8.36	20,874	7.50	24,578	8.82	24,668	7.97
공공질서 및 안전	3,569	1.39	9,773	3.71	9,849	3.54	3,285	1.18	3,471	1.12
교육	4,151	1.62	3,984	1.51	5,042	1.81	4,052	1.45	4,557	1.47
문화 및 관광	22,883	8.94	22,519	8.55	23,771	8.54	19,799	7.11	23,739	7.67
환경 보호	17,949	7.01	14,750	5.60	19,292	6.93	19,160	6.88	19,475	6.29
사회 복지	57,496	22.47	71,898	27.30	81,987	29.46	80,115	28.76	87,180	28.17
보건	4,426	1.73	4,372	1.66	4,375	1.57	4,495	1.61	4,759	1.54
농림해양수산	31,234	12.21	25,501	9.68	28,516	10.25	28,834	10.35	37,880	12.24
산업·중소기업	2,272	0.89	2,462	0.93	1,646	0.59	807	0.29	2,347	0.76
수송 및 교통	12,399	4.85	8,525	3.24	8,879	3.19	11,443	4.11	13,965	4.51
국토 및 지역개발	31,579	12.34	28,156	10.69	19,786	7.11	22,945	8.24	21,941	7.09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2,818	1.10	3,454	1.31	6,126	2.20	10,301	3.70	12,343	3.99
기타	43,256	16.91	45,975	17.46	48,179	17.31	48,728	17.49	53,150	17.17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가평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70,475	480,486	490,495	500,502	511,699	2,453,657	2.10
자 체 수 입	75,652	77,504	79,410	81,370	83,387	397,323	2.50
이 전 수 입	282,651	288,853	294,942	300,916	307,973	1,475,335	2.20
지 방 채	5,000	5,050	5,101	5,152	5,203	25,506	1.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7,172	109,079	111,042	113,065	115,136	555,494	1.80
세 출	470,475	480,486	490,495	500,502	511,699	2,453,657	2.10
경 상 지 출	83,549	87,331	94,332	96,067	97,559	458,838	4.00
사 업 수 요	386,926	393,154	396,162	404,435	414,139	1,994,816	1.7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text{최종연도}/\text{기준년도})^{1/(\text{전체연도 수} - 1)} - 1] \times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가평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액 (B - A)	비율 (B-A)/A
합 계	424,962	425,532	571	0.13
가평군	414,338	416,982	2,644	0.64
공사·공단	7,394	8,086	692	9.36
출자·출연기관	3,230	464	△2,766	△85.62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공사·공단(1개) : 가평군시설관리공단
- ▶ 출자출연기관(2개) : (주)자나라인, 가평군복지재단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가평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5.2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5.29 (18.82)	309,474	78,253	231,221	-	-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가평군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30.5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0.59 (20.33)	373,862	114,381	251,480	8,000	-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27.55	28.41 (18.54)	25.18 (17.99)	26.20 (19.02)	25.29 (18.82)
최종예산	26.39	28.42 (18.30)	29.57 (16.27)	30.59 (20.33)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17년도는 우리 군의 유사단체 그룹이 군-(1)에서 군-(2)로 조정되면서 유사단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최근 5년 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유사시군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었습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가평균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7.4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7.42 (60.96)	309,474	208,644	100,831	-	-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 2016년도 우리 가평균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72.9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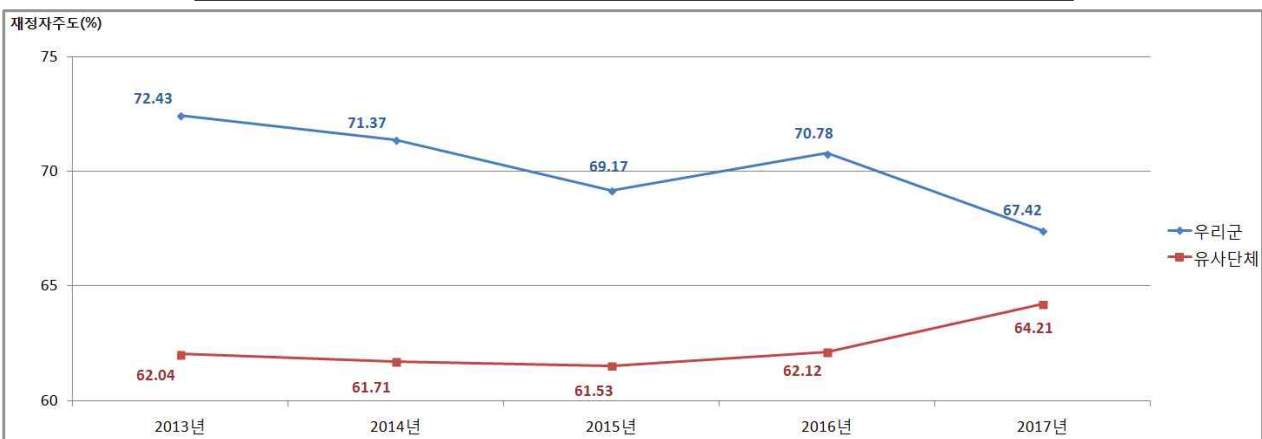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72.97 (62.71)	373,862	272,825	93,037	8,000	-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72.43	71.37 (61.5)	69.17 (61.98)	70.78 (63.60)	67.42 (60.96)
최종예산	70.99	74.20 (64.08)	71.53 (58.23)	72.97 (62.71)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재정자주도 역시 유사단체 그룹의 변화로 유사단체평균에 비해 높은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은 자주도가 하향세인 반면 유사단체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자주도의 차이는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가평균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47,402	373,967	135	220	85	24,428	374,052	△26,650	△2,222
일반회계	289,474	297,404	-	-	-	20,000	297,404	△7,929	12,071
기타 특별회계	27,667	24,936	110	200	90	1,828	25,026	2,641	4,469
공기업 특별회계	29,974	43,281	-	-	-	2,600	43,281	△13,308	△10,708
기 금	287	8,346	25	20	△5	-	8,341	△8,054	△8,054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23,493	△35,263	△29,794	△19,149	△26,650
통합재정수지 2	6,047	2,938	7,251	5,996	△2,222

☞ 고령화의 영향 등으로 예산지출이 크게 늘어 적자폭이 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의 소폭 감소의 영향으로 통합재정수지2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가평군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9	8,921
여성정책추진사업	5	91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2	7,712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	295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가평균은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86,677	1,175	모델안 1

▶ 2017년 당초예산 기준(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지 원 기 타 부 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175	
가평읍	상색리 태봉두밀 용수로 정비공사	16	신규사업
가평읍	이화리 이화천 소교량 확장공사	20	신규사업
가평읍	금대리 비령대 배수로 정비공사	17	신규사업
가평읍	개곡리 당목가일 용수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가평읍	금대로 북한강변로 석축정비공사	20	신규사업
가평읍	하색2리 마을안길 도로정비공사	12	신규사업
가평읍	하색1리 진동안길 도로정비공사	20	신규사업
가평읍	두밀리 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설악면	창의리 배수로 설치공사	10	신규사업
설악면	송산2리 마을회관 앞 가드레일 설치공사	20	신규사업
설악면	방일2리 평촌교 용수로 정비공사	10	신규사업
설악면	천안1리 가마소길 입구확포장 공사	20	신규사업
설악면	이천리 다락재 소하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청평면	청평면 관내 도로정비	20	신규사업
청평면	삼회1리 아랫퇴주 세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청평면	대성2리 원대성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20	신규사업
청평면	삼회1리(사그막) 도로확포장공사	20	신규사업
청평면	상천1리 고갯길 도로정비 공사	20	신규사업
청평면	청평2리 톳골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0	신규사업
청평면	호명리 소하천(범울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상 면	연하1리 먹골배수로 설치	23	신규사업
상 면	행현2리 두리개 세천배수로 복개	20	신규사업
상 면	덕현리 광신동 마을안길 포장	20	신규사업
상 면	태봉리 마을안길아스콘덧씌우기	18	신규사업
상 면	율길리 장막동 세천 석축 공사	12	신규사업
상 면	상동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20	신규사업
조종면	대보1리 보름골 마을안길 도로포장 공사	20	신규사업
조종면	신상2리(가래울) 용수로 설치 공사	20	신규사업
조종면	신상2리 세천석축 설치 공사	20	신규사업
조종면	신하리 배수로 설치 공사	15	신규사업
조종면	대보1리 세천 배수로 설치 공사	10	신규사업
조종면	신상2리 배수로 설치 공사	15	신규사업
조종면	하판리(세구지) 배수로 설치 공사	15	신규사업
북 면	도대1리 마을회관 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0	신규사업
북 면	도대2리 바깥말 도로포장공사	20	신규사업
북 면	제령리 가들기 도로정비공사	20	신규사업
북 면	소법1리 손일부락 배수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북 면	화악2리 버드라치 배수로 정비공사	10	신규사업
북 면	백둔리 평반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12	신규사업
북 면	화악1리 신당용수로 설치 공사	15	신규사업

❖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군의회	개곡리 군도19호선 도로정비공사	80	신규사업
군의회	마장리 아랫마장 도로정비공사	70	신규사업
군의회	대성3리 구운부락 인도 설치공사	60	신규사업
군의회	삼회2리(사그막) 도로 포장 공사	40	신규사업
군의회	상천4리(양짓말) 도로 인도 설치 공사	45	신규사업
군의회	대보1리(다부산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30	신규사업
군의회	상판리 행정마을 마을안길 도로포장	30	신규사업
군의회	목동2리 큰떡골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30	신규사업
군의회	백둔리 연인산 입구 도로 황배수관 설치공사	60	신규사업
군의회	화악1리 성산교회 인근 마을안길 포장공사	30	신규사업

4-3.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가평균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계	5	65	160	148	343,098	312,041	31,056
본청	1	50	123	117	311,720	281,100	30,620
군의회	1	1	2	2	789	706	83
보건소	1	2	10	7	9,616	9,077	540
농업기술센터	1	6	15	13	6,560	5,976	583
상수도사업소	1	1	1	1	364	631	△268
하수도사업소	0	1	3	2	3,427	4,651	△1,225
평생교육사업소	0	4	6	6	7,342	6,755	587
읍면	0	0	0	0	3,279	3,143	136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5.29	67.42	28.17	33.67	45.61	68.7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3	53	-
	부단체장	36	36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26	422	△5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40	40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63	56	△7
	의원국외여비	23	23	-
지방보조금		16,832	10,824	△6,008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443	443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1,093	-
공무원 일·숙직비		-	233	-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 자치단체별 기준경비 기준 및 산출내역 등 구체적 내용 설명
-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준액과 차액은 표시가 안됩니다.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807	2,240
인건비 절감	△1,415	-
지방의회경비 절감	15	4
업무추진비 절감	157	70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	1,523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150	△179
지방청사 관리·운영	900	822
읍면동 통합운영	-	-
민간위탁금 절감	-	-

-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30. 교부), 산정방식은 x'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 442	△ 4,020
지방세 징수율 제고	1,353	△ 476
지방세 체납액 축소	△ 1,440	△ 2,777
경상세외수입 확충	1,055	511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 1,155	△ 1,017
탄력세율 적용	△ 255	△ 261
지방세 감면액 축소	-	-

-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3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6년에 우리 가평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당 없음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6년에 우리 가평군이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당 없음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